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8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현행 법령명에 따라 변경(제1조)
- 나. 근거 법령의 관련 조항 및 공무원 명칭 변경(제2조 및 별표 1, 별표 2)
- 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 업무수당인 ‘방범수당’을 삭제(제3조 및 별표 3)
- 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뛰어 쓰기를 하였으며
 -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근거법령의 명칭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현재 법령 명칭에 맞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약칭을 생략하고 간결하면서도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수정함.
 -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항 중 제2호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명칭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고 [별표 1], [별표 2]에 근거법령 관련 조항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 함.

-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고용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인 ‘방법수당’을 삭제하였음.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 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 분야	2. 의료업 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 (꺾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 20제 항 및 「약사법」 제 20제 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 근무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 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0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월 70,000원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별표 1] (개정 2011.1.13)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2 ~ 3급	월 1,010,000원	월 1,010,000원
4 급	월 909,000원	월 854,000원
5 급	월 909,000원	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등급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